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6
------	-----

제출년월일 : 2001. 4. 24.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와 관련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범위 및 융자심의위원회설치 등 기금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의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대상(안 제5조의1, 2)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설치 신설(안 제9조의1)

3. 참고사항

○자치법규정비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문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소기업법” 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일반회계 전입금
- 2.기금의운용수익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 2.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위원회의 설치) ①용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 “군정조정위원회” 를 “위원회”로 한다

별표1 제1호 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기간(거치기간)란 중 “2년”을 “3년(2년)”으로 하고 제2호 기술개발자금 및 제3호 시설현대화자금의 대출기간(거치기간)란 중 “3년”을 각각“3년(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u>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음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음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 등을 “<u>군정조정위원회</u>”에서 심의 선정한다.</p>	<p>제1조(목적) -----<u>중소기업기본법</u>----- <u>지방자치법 제133조</u> 와 <u>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u>----- ----- ----- ----- -----</p> <p>제5조의1(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일반회계 전입금 2.기금의운용수익금</p> <p>제5조의2(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2.기금및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경비</p> <p>제9조의1(위원회의설치) ①음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u>중소기업육성기금음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음자대상자의 선정)----- ----- ----- ----- 위원회-----</p>

[별표1]

<현행>

용자조건(제12조관련)

세부사업명및용도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원한도액	비고
1.경영 안정 사업	2년	1억원 이내	
2.기술 개발 자금	3년	1억원 이내	
3.시설현대화자금	3년	1억원 이내	
4.유통현대화자금 o시장재개발자금	15년 (5년)	8억원 이내	

<개정안>

용자조건(12조관련)

세부사업명및용도	용자기간	지원한도액	비고
1.경영 안정 사업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1억원 이내	
2.기술 개발 자금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1억원 이내	
3.시설현대화자금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1억원 이내	
4.유통현대화자금 o시장재개발자금	15년(5년거치 10년균분상환)	8억원 이내	